

P2P금융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2011년 1월 10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진호

1. 문제의 제기

- 국내에는 P2P금융과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P2P금융과 관련된 탈·불법 사례가 이슈화되거나 금융당국이 P2P금융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나 감독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현재 국내 P2P금융의 규모는 아직까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거래자 수도 수천명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거래규모 및 거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P2P금융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향후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관련업계 현황을 분석·검토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

2. 국내 P2P금융 현황

- 국내에는 2007년 6월 출범한 머니옥션을 필두로 팝펀딩, 펀딩마켓, 피투피머니 등이 P2P금융 중개사이트를 운영중
 - P2P금융의 국내 시장규모는 100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매우 영세하며, 대부분의 P2P금융회사들의 중개방식이나 상품유형 등은 대동소이하나 업체별로 구체적인 거래구조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머니옥션은 2007년 6월 국내 최초로 P2P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경매방식을 통해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며, 이 과정에서 대출자 및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대출중개 과정에서 머니옥션이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히 경매절차의 관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대출대상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가서비스로 대출신청자의 게시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대출신청자의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공표, 대출계약 관련 서류작업 등을 대행
 - 또한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대출자에게 상환기일 전에 상환기일의 통보와 입금요청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출의 이자 및 원금상환 등에 따른 입·출금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

- 국내 P2P금융업계 2위 업체인 팝펀딩은 2010년 12월 7일 현재 누적 경매 낙찰건수 1,014건, 낙찰금액이 17억원 정도로 머니옥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
 - 사업모형 측면에서 머니옥션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1인의 투자자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강제적인 분산투자가 적용된다는 것
 - 팝펀딩의 낙찰 결정방식은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선착순 고정이율 경매의 두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
 - 대출을 투자자들간에 사고 파는 채권경매시스템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대출 시행 후 만기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펀딩마켓과 피투피머니는 후발업체로서 경매방식을 통해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본질적인 사업모형은 전술한 양대 업체와 유사

3. 국내 P2P금융의 신용리스크

- 중개업자들이 밝히고 있는 국내 P2P 대출의 신용손실은 7% 혹은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나,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정확한 대손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
- P2P금융의 잠재적인 신용리스크는 P2P금융 중개업체들의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향후 P2P 대출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 현실화될 업계 전반의 손실율은 지금보다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

팝펀딩 대출상환통계

건 수	연체·대손율
총경매낙찰건수: 1,014	건수기준 정상상환율: 68%
발생 상환건수: 7,052	건수기준 단기연체율: 18%
정상상환건수: 4,814	건수기준 장기연체율: 12%
단기연체: 1,324	낙찰금액기준 대손율: 6.00%
장기연체: 775	상환대상금액기준 대손율: 9.06%
대손투표: 6	
대손: 133	

주: 2010년 12월 7일 현재
자료: 팝펀딩 홈페이지

4. 해외 P2P금융의 사업모형

- 최초의 P2P중개업자인 영국의 조파가 출현한 것이 2005년이므로 2007년 6월 머니옥션이 영업을 시작한 우리나라에 비해 해외 P2P금융의 역사 자체가 길다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사업모형이 국내에 비해 매우 다양하며, 전통적 금융과 P2P금융의 경계선상에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
- 현재 전세계적으로 80여개 업체가 P2P금융으로 분류되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업모형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1) 직접대출의 연결자

- 상호간에 면식이 없는 대출신청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이들 사이에 대출이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 일반적으로 국내 P2P금융 중개업체와 유사한 사업모형으로 미국의 프로스퍼와 렌딩클럽이 여기에 해당

(2) 간접대출의 중개자

- P2P 대출업체가 직접 개별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최초의 P2P 대출업체인 영국의 조파와 글로브펀더 등

(3) 친구 및 가족간 대출중개

- 상호 안면이 있는 대출신청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상호간에 합의된 대출조건을 명시적인 대출계약으로 공식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버진머니, 론백, 놀로 등

5. 해외 P2P금융 현황

- 미국의 P2P금융 시장은 선발업체인 렌딩클럽과 프로스퍼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들 두 업체를 통한 총대출규모는 거의 4억달러에 육박
 - 렌딩클럽은 신규대출기준으로 세계 1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대출규모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1위 업체인 프로스퍼를 2011년 중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대출잔액 기준으로 최대업체인 프로스퍼는 높은 부도율 등으로 신규대출이 부진하여 업체가 점차 위축
 - 규제 강화와 선발 P2P금융 중개업체들이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 시장에 진입을 준비중인 업체가 상당 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의 경우 별다른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0년 중에만 4개의 새로운 P2P중개업체등이 등장하여 선발업체인 조파와 경쟁
 - 조파는 현재 영국의 개인무담보대출 시장의 1%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고 2010년말까지 1억 파운드의 대출 달성 예상

6. 해외의 P2P금융 규제

- 미국의 경우 2008년 중 SEC가 동 업계의 대출중개 사업모형이 실질적으로 증권중개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렌딩클럽과 프로스퍼 등 관련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치를 중단하고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비로소 영업을 재개
 - 최근에는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GAO가 2011년 7월까지 P2P대출에 관한 검토를 통해 동 업계에 대한 규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체제를 확립하는 작업에 돌입
 - P2P대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신대출모형연합은 P2P금융의 규제권한이 SEC가 아닌 CFPB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 영국의 경우 P2P금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국(OFT: Office of Fair Trading)이 실질적인 P2P금융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수행
 - OFT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부당행위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최대 P2P금융 중개업체인 조파가 오히려 감독당국에 대해 공식적인 규제체제의 확립을 요구

7. P2P금융 사업모형의 특징

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

- P2P금융은 개인대 개인, 동료대 동료라는 명칭 자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평범한 다른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금융중개방식을 의미
- P2P금융 중개업자는 대출의 주체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대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대출이 필요한 개인을 연결 짓는 기능을 수행○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신용평가와 관련된 기능은 물론 실제 대출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 즉 대출금 및 상환원리금의 입출금 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나. 대출신청자 주도의 금리결정

- P2P 방식의 대출은 대부분 대출신청자가 자신이 부담 가능한 금리를 제시하고 경매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찾는 형태로 결정

- 투자자들은 금리 수준에 크게 집착하기보다 “이웃을 돕는다” 는 자기만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향
- P2P금융의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비해 위험선호도가 높아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대출희망자에게도 자금을 공급

다. 비교적 장기인 대출만기

- 해외의 P2P 대출은 대부분 비교적 장기인 36개월 정도의 만기로 시행되며, 국내에서도 P2P대출의 만기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에 비해 장기임.
- 대출자의 월상환부담금을 크게 낮추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

8. 투자자 시각에서 본 P2P금융의 사업모형

가. 직접대출의 연결자 모형

- 프로스퍼와 렌딩클럽은 P2P금융의 기본특징에 비교적 충실
- 렌딩클럽의 경우 대출금리가 순수 경매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출신청자의 신용평점에 따라 결정되며, 포트폴리오 참여 형태의 투자는 사실상 중개업체인 렌딩클럽이 대출을 결정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대출의 포트폴리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

나. 간접대출의 중개자 모형

- 조파와 글로브펀더는 모두 중개업체가 직접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한다는 점에서 P2P금융의 기본적인 사업모형을 벗어남.
- 조파의 경우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CD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대출
- 글로브펀더는 사실상 대부업을 행하는 기업이며, 투자자의 역할은 단순히 대부업체인 글로브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 그침.

다. 친구 및 가족간 대출중개 모형

- 친구 및 가족간 대출중개의 사업모형을 채택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등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중개라기보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대출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도와주는 법률서비스에 가까운 영업행태
- 단 버진머니의 경우는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의 이체 등 제한적인 대출관리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프로스퍼와 렌딩클럽 비교 (투자자시각)

구분	프로스퍼	렌딩클럽
개관	온라인 경매 대출신청자가 대출금액 및 금리 게시 최저금리 응찰자에 낙찰	대출신청 US시민으로 한정 FICO평점 640 이상 DTI 30% 이하 현재 연체 없을 것
최소투자금액	US\$25.00	없음
최대투자금액	US\$2,000,000	없음
자금이체수수료	없음	US\$25 for outbound transfer
예금자보호	없음	미투자금액은 FDIC보호대상
개별대출 최소투자금액	US\$50	US\$25 포트폴리오 참여시 US\$500
개별대출 최대투자금액	US\$25,000	없음
투자기간	36개월	36개월
만기전 상환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리결정	경매방식	신용평점에 따라 금리결정
수수료	대출잔액의 1% 부과	매월 상환금의 1% 부과
1개월 이내 연체	연체수수료 US\$15	연체수수료 US\$15와 미상환월부금의 5% 중 작은 금액
1개월 이상 연체	추심업체 이관 3개월 이상 연체시 부도	추심업체 이관
미국 영업개시일	2006.2	2007.5

조파와 글로브펀더 비교 (투자자시각)

구분	조파	글로브펀더
개관	사회적 금융 투자자는 예금보호대상인 조파CD매입 투자자 신용리스크 부담안함	글로브펀더가 직접 투자 혹은 제휴 투자자의 참여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미개방
최소투자금액	US\$500	
최대투자금액	제한없음. 예금보호한도는 US\$100,000	
자금이체수수료	없음	
예금자보호	NCUSIF (National Credit Union Shared Insurance Fund) 보호대상	
개별대출 최소투자금액	없음	
개별대출 최대투자금액	없음	
투자기간	조파CD만기는 1년, 리볼빙 가능	
만기전 상환	CD만기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대출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영향 없음	
금리결정	투자자가 매입하는 조파CD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결정	
수수료	없음	
1개월 이내 연체	CD만기까지 투자자 영향 없음	
1개월 이상 연체	CD만기까지 투자자 영향 없음	
미국 영업개시일	2007.12 (유럽은 2005.12)	

버진머니, 론백, 놀로 비교 (투자자시각)

구분	버진머니	론백	놀로
개관	친구 및 친척간 대출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용도별 계약서 혹은 표준계약서 제공	다양한 형태의 약속어음 형태 계약체결 지원
투자금액, 이자율, 대출기간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자금이체수수료	없음	없음(자금이체에 관여 않함)	없음(자금이체에 관여 않함)
만기전 상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신청수수료	없음	U\$9.95 혹은 U\$14.95	U\$9.99~U\$14.00
계약체결 수수료	U\$99.00(대출관리 없는 경우) U\$199.00(대출관리 포함)	없음	없음
연체시 조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대출신청자와 투자자간 협의
미국 영업개시일	2001년 써클렌딩(Circle Lending)으로 출범 2007년 명칭변경	불명확	1970년대 초

9. 대출신청자 시각에서 본 P2P금융의 사업모형

- 대출신청자의 시각에서 볼 때 금리나 대출금액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제외하고는 P2P금융 중개업체가 직접대출의 연결자인지 혹은 간접대출의 중개자인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프로스퍼와 렌딩클럽 비교 (대출자시각)

구분	프로스퍼	렌딩클럽
최소대출금액	U\$1,000 (4개 주의 경우 U\$1,000이상도 가능)	U\$500
최대대출금액	U\$25,000 (VT의 경우 최대 한도 U\$4,000)	U\$25,000
대출기간	36개월	36개월
만기전 상환 수수료	없음	없음
대출신청 수수료	없음	없음
대출계약 성립 수수료	신용등급별 대출금액의 1%~3%와 U\$25 중 큰 금액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의 0.75%~2%
대출관리 수수료	없음	없음
1개월 이내 연체	상환예정일 익일 연체수수료 U\$15 부과 16일 이후 U\$15와 미상환월부금액의 5% 중 큰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	상환지체벌금 U\$15 15일 경과 후 추가로 연체수수료 U\$15 부과
1개월 이상 연체	추심업체 이관 3개월 이상 연체시 부도처리 후 매각 추심된 금액에서 추심수수료 징수	추심업체 이관 추심된 금액에서 추심수수료 징수

조파와 글로브펀더 비교 (대출자시각)

구분	조파	글로브펀더
최소대출금액	없음	없음
최대대출금액	U\$25,000	U\$25,000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신청자 별로 결정
만기전 상환 수수료	없음	명시되지 않음
대출신청 수수료	없음	없음
대출계약 성립 수수료	없음	자동이체의 경우 대출금액의 1.75%와 U\$50 중 큰 금액 아닌 경우 3.75%와 U\$200 중 큰 금액
대출관리 수수료	자동이체의 경우 없음 수표발행의 경우 발행 건별로 U\$15 처리수수료 부과	없음
대출금리 결정방식	대출신청자의 신용이력에 따라 결정되며 (2008년 8.5%~16.99% 수준), 추가적으로 선택한 지원정도에 따라 조정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보고서와 신용평점에 따라 결정 2007년 10월 기준 최소 예상금리는 9.5% ~ 19.75%
1개월 이내 연체	상환지체벌금 U\$15 부과 수표지급거절의 경우 건당 U\$15 부과	자동이체의 경우 U\$25 혹은 주별 상한 중 작은 금액 15일 경과 후 추가로 주별 규제에서 허용한 한도내에서 연체수수료 부과
1개월 이상 연체	명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0. 국내 P2P금융의 사업모형 평가

가. 거액투자자의 대부업 등록

- 국내의 P2P금융 중개업체들은 거액투자자들에게 대부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의 운영방식은 P2P금융 중개업체들이 대부중개업을 행하는 것에 해당
-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출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P2P금융 중개업자들은 간접대출 형태로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사업모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 간접대출

- 머니옥션의 경우 P2P중개업체가 대부업자의 자격으로 대출을 행하며, 팝펀딩의 경우 실제 대출은 저축은행이 인터넷 대출 형태로 시행

다. 위임대출

- 대부분의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핸드프리(머니옥션), 오토비딩 및 미투비딩(팝펀딩), 프라임머니트러스트(펀딩마켓) 등 다양한 명칭으로 투자자가 직접 대출자를 선택하는 대신 위임에 의해 혹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출자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제공
- 시간 혹은 정보의 제약으로 대출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손쉽게 P2P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저변을 확대하는 효과

라. 분산투자의 강제성 여부

- 대부분의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를 권유하나 실제로 분산투자를 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판단
- 단, 팝펀딩의 경우 분산투자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보다 강력한 투자자의 리스크관리 정책을 채택

11.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투자자 관련)

가. 투자자의 법적 지위 문제

- 현재 P2P금융 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법적지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P2P금융의 중개업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대출을 중개하는가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중개업자 스스로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낙찰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단순히 대부업체인 중개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낙찰된 대출의 원리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자격을 획득
- 중개업자의 제휴 금융회사(저축은행)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
- P2P금융의 거래구조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대출신청자 관계의 성립을 위해 중개업체가 복수의 거래를 자기책임 혹은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피
- P2P금융을 둘러싼 투자자-대출자간, 투자자 혹은 대출자 - 중개업자 혹은 금융기관간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의 소지

나. 신용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문제

- 대부분의 P2P금융 중개업자들은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문제가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의 본인확인 등의 검증을 수행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투자자 손실과 관련한 법적 다툼의 소지

다. 자동투자(위임투자) 관련 손실 문제

-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동투자는 투자자를 위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자동투자에 의해 낙찰받은 대출의 손실율이 그렇지 않은 대출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투자 시스템을 제공한 P2P금융 중개업자와 투자자간에 상당한 고객마찰이 발생할 소지

12.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대출자 관련)

가. 대출소유권의 문제

- 사실상 모든 국내 P2P 중개업체들이 자신들이 중개하는 대출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목적 이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선의”를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광고
- 그러나 실제로 대출의 법적 소유권은 투자자가 아닌 대부업자인 중개업자 혹은 상업적 금융회사에 귀속
- 대출의 상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상환불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의 결정과정과 유사하게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호적인 여건에서 상환기일의 연장이나 상환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 불가능
- 애당초 투자자가 대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이 대출의 신청 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나. 신용정보의 공개 관련 문제

- P2P금융 중개사이트에 게시되는 신용정보는 잠재적 입찰참가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
- 국내 P2P 대출은 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부업자 혹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 법적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실제 투자의사가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투자자로 등록하거나, 투자자 자격으로 획득한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한 검토 필요

13. P2P대출의 법적 효력과 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가. P2P 대출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

- 국내 P2P금융에 있어서 대출의 법적 효력 문제는 투자자가 자신이 낙찰받은 계약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고 얻게 되는 법적 지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함.
- 투자자의 행위가 대부업자인 중개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경우 대부업체인 P2P 중개업체는 대부업을 위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회원들로부터 모집하는 것이 되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불분명
- 중개업체가 개별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금을 집금하여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유사수신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담보 제공의 적법성 여부도 불투명
- 대출자-투자자간의 법적 대출계약이 직접 성립하지 않는 사업모형 하에서 P2P금융의 중개업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도 검토가 필요
- 특히 자동투자의 경우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채무자인 P2P대출 중개업체가 채권자의 자금제공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과

나. P2P 대출 중개업체의 법적 지위 문제

- 현재 국내 P2P금융 중개업체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편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부업체 혹은 대부중개업체의 자격으로 P2P금융을 수행
- P2P 대출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는 곧 P2P 대출 중개업체의 법적 지위 문제에 직결

14.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금융업으로서의 P2P금융의 법적 근거 확립

- 국내 P2P금융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 사업모형을 표준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융업의 하나로 P2P금융의 법적근거를 확립하는 것 □ 독립된 금융업으로서의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자와 투자자간에 직접 법적 효력을 갖는 대출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
- 대출신청자-P2P금융사업자, P2P금융사업자-자금제공자로 계약이 분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P2P금융사업자의 법적지위를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의 금융관련 법체계상으로 다수의 대출신청자와 자금제공자가 경매방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P2P금융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이러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

나. 금융회사의 자기책임거래와 P2P금융의 분리

- 독립된 금융업으로서의 P2P금융의 법적 근거 확립 후 중개업체가 P2P금융과 자기책임거래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필요
- P2P금융 사업자가 대출의 중개와 병행하여 자기책임으로 직접 대출에도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소지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직접 대출에 참여하는 P2P금융 사업자와 투자자간에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불공정 경쟁의 소지
- P2P금융 사업자가 경매를 신청한 양질의 대출희망자와 직접 접촉에 의해 자기책임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높은 대출신청자만이 투자자들에게 노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다. P2P금융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과 소비자보호

- P2P금융 중개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에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
- 이와 더불어 투자자 및 대출신청자의 보호를 위해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새롭게 대출자-투자자간의 직접계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